

항만시설 사용 요금

2014년 4월 1일 적용

구분	내역		단위	금액	
				외항선	내항선
1 입항료	입항 1회에 총 톤수 1톤까지		톤	2.16엔	1.16엔
2 예인선 '카무이' 사용료	(1) 기본요금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선박	시간	30,700엔	33,156엔
		총 톤수 5000톤 미만의 선박	"	52,000엔	56,160엔
		총 톤수 10,000톤 미만의 선박	"	67,000엔	72,360엔
		총 톤수 15,000 미만의 선박	"	101,900엔	110,052엔
		총 톤수 20,000 미만의 선박	"	114,600엔	123,768엔
		총 톤수 25,000 미만의 선박	"	130,700엔	141,156엔
		총 톤수 30,000 미만의 선박	"	158,200엔	170,856엔
		总吨位30,000吨以上的船舶	"	199,700엔	215,676엔
	사용 시간이 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 30분마다 5할의 금액을 가산한다.				
	(2) 할증요금	아: 동절기 (1)의 5할 상당액 이: 업무시간 외 (1)의 5할 상당액 우: 악천후 (1)의 5할 상당액 예: 방파제 바깥 (1)의 5할 상당액			
	(3) 대기료	예인선이 대기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1) 및 (2)의 '이' 전체의 5할 상당액			
	(4) 이시카리만 신항-오타루항간 회항료	편도	1회	55,000엔	59,400엔
3 부두 사용료 부두, 물류 선착장(어항구역 등 제외)에 적용	(1)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아. 계류시간 12시간까지	톤	8.40엔	9.07엔
		이. 계류시간 24시간까지('아'의 경우를 제외함)	"	11.20엔	12.09엔
		우. 계류시간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2시간마다 '이'의 금액을	"	5.60엔	6.04엔
	(2) 총 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아. 계류시간 12시간까지	척	832엔	897엔
		이. 계류시간 24시간까지('아'의 경우를 제외함)	"	1,110엔	1,198엔
		우. 계류시간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2시간마다 '이'의 금액을 가산한다	"	555엔	598엔
	(3) 총 톤수 50톤 미만의 선박	아. 계류시간 12시간까지	"	405엔	437엔
		이. 계류시간 24시간까지('아'의 경우를 제외함)	"	540엔	583엔
		우. 계류시간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12시간마다 '이'의 금액을 가산한다	"	270엔	291엔
4 선박 급수시설 사용료	(1) 기본요금	아.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10m까지	하절기	7,800엔
				동절기	10,000엔
		이. 총 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5m까지	하절기	3,900엔
				동절기	5,000엔
		우. 위 수량을 초과하는 급수의 경우	1m ² 당	하절기	780엔
				동절기	1,080엔
	(2) 할증요금	근무시간 외 및 악천후의 급수는 기본요금의 5할을 가산한다.			
5 물류 처리장소 사용료 (어항구역을 제외함)	(1) 콘크리트 포장의 물류처리지역	아. 일반 사용료	첫날부터 15일까지	1일당	m ² (평방미터)
			16일 이후	"	"
		이. 전용 사용료	1달간	"	110.55엔
	(2) 다른 물류처리지역	아. 일반 사용료	첫날부터 15일까지	1일당	"
			16일 이후	"	"
		이. 전용 사용료	1달간	"	105.84엔
	(3) 서2호 물류처리지역	1달간		—	3,329,000엔
6. 항만시설 용지 등 사용료 (어항구역을 제외함)	(1) 일반 사용료	아. 첫날부터 15일까지	1일당	m ² (평방미터)	3.12엔
		이. 16일 이후	"	"	4.75엔
	(2) 전용 사용료	아. 방진펜스가 있는 포장지역	1달간	"	70.20엔
		이. 포장지역	"	"	65.88엔
		우. 비포장지역	"	"	56.16엔

항만시설 사용 요금

구분	내역			단위	금액	
7 창고 사용료	(1) 일반 사용료	아. 허가일로부터 3일까지	1일당	m(평방미터)	5.88엔	
		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후 15일까지	〃	〃	12.00엔	
		우. 허가일로부터 16일 이후 30일까지	〃	〃	26.57엔	
		예. 허가일로부터 31일 이후	〃	〃	53.93엔	
	(2)전용 사용료		1달간	〃	337엔	
	(3) 천장 크레인 부착 창고 일반 사용료	아. 허가일로부터 3일까지	1일당	〃	19.30엔	
		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후 15일까지	〃	〃	39.28엔	
		우. 허가일로부터 16일 이후 30일까지	〃	〃	86.96엔	
		예. 허가일로부터 31일 이후	〃	〃	176.50엔	
(4) 천장 크레인 부착 창고 전용 사용료		1달간	〃	557엔		
(5) 훈증시설 사용료		1달간	〃	185엔		
(6) 정온시설 사용료		1달간	〃	82엔		
8 하역 기계 사용료	(1) 갠트리 크레인			시간	50,100엔	
	사용시간이 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 30분마다 5할의 금액을 가산한다					
	(2) 리치 스택커			시간	5,140엔	
	사용시간이 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 30분마다 5할의 금액을 가산한다					
(3) 침용 하역기계			월	7,341,000엔		
9 계산기 사용료	트럭 스케일			1회	523엔	
10 전기시설 사용료	냉동 콘센트		1구당	시간	143엔	
11 여항시설 등 사용료 (여항구역 등에 적용)	(1) 항만시설용지 등 사용료	아. 기본요금	1급 지역	1달간	m(평방미터)	57.82엔
			2급 지역	〃	〃	47.62엔
			3급 지역	〃	〃	40.81엔
			포장지역의 경우 각급 지역의 단가에 7 엔 93 전을 가산한다.			
		이. 할증 요금	공작물(매설관, 가공관, 전주 등 이와 유사한 종류 및 가설물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기본 요금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여항구역 등 물류창고 사용료	아. 일반 사용료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1일당	척	169엔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	339엔
		이. 등록 사용료	등록기간 1개월까지의 선박		톤	136.06엔
			등록기간 1개월 초과 3개월까지의 선박		〃	374.20엔
			등록기간 3개월 초과 6개월까지의 선박		〃	714.40엔
등록기간 6개월 초과 9개월까지의 선박			〃	1,020.58엔		
등록기간 9개월 초과 1년까지의 선박		〃	1,292.74엔			

비고

- '여항구역 등'은 여항구역 및 선류를 말함
- 하절기는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집무시간은 일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 178호]에 규정하는 휴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및 관리자가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로 함
- '1급지역'은 계류시설의 법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용지, '2급지역'은 계류시설의 법선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용지에서 1급지역을 제외한 곳, '3급지역'은 1급지역 및 2급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함
- '외선박'은 소비세법 시행령(쇼와 63년 정령 제360호) 제 17조 제 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선박'은 외선박 이외의 선박을 말함
- 입항료의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의 입항횟수를 적용한다.
(1) 동일 선박이 일 2회 이상 입항하는 경우에는 일 1회 입항으로 한다.
(2) 동일 선박이 월 11회 이상 입항하는 경우에는 월 10회 입항으로 한다.